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4.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330호로 2024년 4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 정보의 보관·삭제의 조례를 개정하여 유관부서·기관 공무원 및 관제센터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유관부서·기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조항 개정(안 제14조제2항)
- 나.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명확화(안 제18조제3항)
- 다. 별지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2) 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3)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3.7.~3. 2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 정보의 보관·삭제의 조례를 개정하여 유관부서·기관 공무원 및 관제센터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4조제2항 단서에서는 유관 부서·기관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방문 시에 공문을 지참하여 그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 후에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한 영상정보에 한정하여 보관기간을 최대 90일 이내로 명시하였음.

### ○ 검토결과

- 먼저 안 제14조제2항 단서 조항에서는 유관 부서·기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단서를 신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 관제센터의 출입자 통제를 일부 완화하였는데,

- 이처럼 출입자 통제를 일부 완화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더라도 내부 방침으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문 목적’에 한하여 출입·방문을 허가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영상정보의 기본적인 보관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에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제3호에만 단서를 신설하여 “특정한 영상정보에 한하여 최대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제1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제2호의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영상제공 시점 등 보관기간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반면, 제3호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는 조문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보관기간을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특정 영상정보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일부 명확히 하고자 해당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1항 본문에는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관기간을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법 제4조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내부방침을 세워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앞서 언급한 내부방침을 세워 안전조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면,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생략)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생략)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4.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331호로 2024년 4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차요금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책정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전통시장을 이용한 차량에 대해 현행 ‘최초 90분 이내 주차요금의 30% 할인’을 ‘최초 2시간까지 50% 할인’으로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확대하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는 최초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 1 비고 제11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4. 3. 7.~3. 2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차요금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책정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안 별표1 비고 제11호 본문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주차요금 할인 대상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더불어 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주차요금 할인시간은 최초 “90분 이내” → “2시간 이내”로, 할인율을 “30%” → “50%”로 확대하였고,
- 또한 같은 호 본문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구매한 영수증 등을 제시할 시에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공영주차장만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공영주차장은 할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인대상을 “상점가·골목형 상점가”의 인근 주차장까지 확대해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같은 호 단서에서는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인 경우에는 최초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 검토결과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고,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는 물론, 주차장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대형마트 선호현상 등으로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등의 고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등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완화를 통해 전통시장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전임.
- 먼저, 안 별표1 비고 제11호 본문에서 확대된 할인율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 타 자치구의 전통시장 주차요금 할인규정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50% 할인”을 적용하는 자치구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이보다 할인율이 높은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3개,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3개, 시간

제한 없이 “50% 할인” 1개 등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자치구들이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확대될 할인율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서울시 자치구 전통시장등 주차요금 할인규정 현황		
할인 규정	자치구	개
주차요금의 30% 할인	중구, 노원, 서초	3
주차요금의 50% 할인	강남	1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성동, 서대문, 동작	3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성북, 강북, 강동	3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의 50% 할인	도봉, 강서	2
최초 90분까지 주차요금의 30% 할인	영등포, 구로, 금천, 송파	4
최초 90분까지 주차요금의 70% 할인	광진	1
최초 90분까지 주차요금의 90% 할인	관악	1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30% 할인	마포	1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50% 할인	종로, 용산, 동대문, 중랑, 양천 + 서울시	5
할인규정 없음	은평(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없음)	1

- 다음은 신설된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1)영등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2024년 6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최초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해당 주차장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조성된 것으로, 해당 취지에 맞춰 전통시장등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주차장 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더욱이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구매 금액에 따라 주차시간 단위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감안할 때, 법 제19조

1)영등포동공공복합시설 내에 조성

제1항에 근거하여 전통시장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생략)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13. (생략)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6. 8.]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5. 2. 3., 2016. 12. 2., 2018. 8. 14., 2020. 2. 11.>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 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15. 2. 3.>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전문개정 2010. 6. 8.]

## 2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